

내의원 편 『內醫院 式例』의 저술 시기와 내용 연구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6과

A Study on Written Year and Contents of 『Naeuiweonshikrye』

Hun-Pyeng Park

Korean medicine sixth department. Hwasun maru Geriatric hospital

Naeuiweon (內醫院) is the royal medical office of Joseon Dynasty. 『Naeuiweonshikrye (內醫院式例)』 contains various regulations of Naeuiweon in early 19th century. Therefore, attention has been utilized by several researchers. However, these studies show partial side of this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analyze contents of 『Naeuiweonshikrye』. Additionally, as through the body of the written time of the contents was analyzed this document.

The authors of this study found that.

First, 『Naeuiweonshikrye』 is estimated in the volume whether modified or supplemented prior 『Naeuiweonji (內醫院志)』.

Second, the written time of this document is about Sunjo'10(1810).

Third, 『Naeuiweonshikrye』 is the primary document that provides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operational and regulatory Naeuiweon (內醫院)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re is no other material information has been recorded only in the literature. For example, there are several building names in the Naeuiweon.

Finally, this document informs the concept of pharmaceutical terminology used in Joseon Dynasty.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Naeuiweonshikrye, Naeuiweon, Naeuiweonji, Sunjo

I. 서론

조선시대 三醫司 중에서 내의원은 왕실진료를 담당했던 이유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사료 속에 풍부한 자료가 담겨서 오늘에 전한다. 그 외에도 『藥房日記』, 『太醫院日記』 등 일부가 현존하는 관청일기와 『경국대전』 등 법전의 관련 규정을 통해서도 내의원의 실태에 대해 일정 부분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규장각에 소장된 『內醫院式例』는 내의원의 제반 규

정을 담고 있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고 활용되어왔다. 안상우에 의해 개괄적인 소개가¹⁾ 이루어졌고, 『내의원식례』를 활용한 기존 연구로는 궁중 출산 풍속을 연구한 신명호,²⁾ 『태의원일기』를 연구한 김정선,³⁾ 왕실의약을 다룬 홍세영,⁴⁾ 궁중음식을 다룬 주영하⁵⁾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내의원식례』 문헌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해당 주제를 다루면서 부차적으로 다루거나 관련부분만 인용하여 논하는 수준이었다.

『내의원식례』는 서문, 발문 등이 존재하지 않은 필사본으로 그 저술 시기가 純祖 연간으로만 추정되어왔을 뿐 저술시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자는 본문의

접수 ▶ 2015년 04월 28일 수정 ▶ 2015년 05월 29일 채택 ▶ 2015년 05월 29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화순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 1) 안상우. 「고의서산책 120 조선왕실의 규정집」. 민족의학신문. 2002.8.
- 2) 신명호.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고문서연구. 2002;21:156-176.
- 3) 김정선. 「1898년도 조선왕실의 의료연구」. 의사학. 2004;13(2):219-232.
- 4) 홍세영. 「왕실의 의약」. 한국의사학회지. 2010;23(1):105-113.
- 5) 주영하. 「조선왕조 궁중음식 관련 고문헌 자료 소개」. 장서각. 2013;30:422-436.

내용과 관련 문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본고를 통해 『내의원식례』의 전체 내용에 대해 조목 별로 개괄하면서 본 문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가적으로 『승정원일기』와 같은 관찬사료와 조선시대 법전의 관련 규정을 일부 덧붙였다. 이는 향후 내의원 관련 연구에서 본 문헌을 활용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내의원식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을 복제 신청하여 받은 사본 자료이다.⁶⁾

II. 본론

1. 서지 사항

1) 형태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본서의 표제는 “內醫院”이며 앞뒤 표지를 제외하면 전체가 17장 겹장인데 처음과 끝장은 아무런 내용 없이 계(界)만 존재하는 빈 면이고, 내용이 있는 면에는 쪽수가 판심(版心)의 하단부에 표기되어있다. 책의 크기는 35.3×22.3 cm이다.⁷⁾ 界가 있는 종이에 10행(行)으로 20자로 필사되었는데 注는 雙行的 소자로 되어있다. 五針眼釘法으로 제작되어있다.



그림 1. 『내의원식례』 표지.

6) 규장각 도서번호는 17200. 복사본은 M/F79-103-189-B 자료를 토대로 복제된 사본이다.

7) 책의 크기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서지에 의한다. <http://e-kyujianggak.snu.ac.kr/>

2) 내용의 구성사항

본 문헌의 내용은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 없이 목록과 본문만으로 이루어진다.

(1) 목록은 “內醫院”이란 題下로 시작하고 총 서른 개의 조문을 열거한다. 官制 조를 비롯한 여섯 개의 조문에서 “附”를 아래에 적고 해당 조항의 내용 중에 조항 이름으로 는 묶이지 않는 사항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나뉘어서 각기 다른 조문이 되고, 조문의 열거 순서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칙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구성 체제에 있어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

(2) 본문도 목록과 같이 “內醫院”이란 제하로 시작하고 서른 개의 조문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내용이 기술된다. 본문의 순차는 다음과 같다.

官舍, 官制, 啓辭問安, 口傳問安, 分提調問安, 醫官單子問安, 醫女問安, 入侍, 設廳, 年例進上, 年例卜定, 年例劑造, 京外貢藥材, 應下, 藥劣, 監劑, 玉樞丹祭, 入番, 舉動進參, 坐起, 奉使, 給馬, 供饋, 入啓文書, 文簿, 率屬, 料布, 什物, 藥田, 雜例.

이 중 附加 표기된 조문은 여섯 개로 1. 官制 조에 遷轉, 甄復, 起復이, 2. 啓辭問安 조에 口傳啓가, 3. 設廳 조에 直宿과 分藥房이, 4. 入番 조에 別入直이, 5. 坐起 조에 考講이, 6. 什物 조에 書冊이 더해져 있다.

2. 본문 내용의 개괄

논자는 본문 편제 순서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원문에는 서른 개의 조문이 구분 없이 열거되어있는데 본고에서는 여섯 개의 주제별로 조문들을 묶어 분류해 보았다. 또한 각 조문별로 먼저 전체적으로 내용을 개괄하고 고찰하면서, 더 눈여겨볼 점들에 대해서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과 논자의 按을 따로 두었다.

1) 沿革 관련 조목 - 2조목

내의원의 관직제도 규정과 변천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

용이다. 관사와 관제 두 개의 조문이 이에 해당한다.

① 내용 개괄

도제조 이하 제조와 의관 등의 원역을 설명한 조문이다.

(1) 官司 造

① 내용 개괄

내의원의 위치, 그에 속한 여러 건물들(대청, 사관방, 본청, 침의청, 의약동참청, 장무소, 서원방 등)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의 직제는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조」의 규정에서 크게 변화된 바는 없고, 단지 조선 후기에 생겨난 내침의나 의약동참의와 관련된 규정들이 새롭게 보인다.¹⁰⁾

② 내용 고찰

건물들은 이름만 기록되고 크기나 연혁 내용은 없다.

③ 내의원의 의관 녹직

○ 정, 첨정, 판관, 주부는 모두 한사람이다. 직장은 세사람이다.<인조 조 을유년(1645)에 두 사람을 부사정으로 바꾸었다.> 봉사, 부봉사 각자 두 사람이다. 참봉 한 사람이다.<이상의 내의 열두 사람은 의과에 합격한 이여야 한다. 천거된 사람을 계목으로 올려서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 올리고 내리고 체직하고 붙인다.>

③ 院의 위치

○ 하나는 창덕궁 홍문관 동쪽에 있고, 하나는 경희궁 승정문 남쪽에 있다.

【一在昌德宮弘文館東，一在慶熙宮崇政門南】

按 : 내의원은 국왕과 그 가족의 진료를 담당하였기에 궁궐 내에 위치하였는데 전란이나 화재 등의 이유로 국왕의 처소가 바뀌게 되면 내의원도 이에 따라 이동하였다. 예를 들어 편자미상의 『宮闕志』⁸⁾를 보면 범궁인 경복궁의 내의원은 관상감의 남쪽에 있었고, 창경궁의 내의원은 명정전 북쪽에 있었다. 조선 시대 내내 같은 장소에서 속한 건물만 변화해온 전의감과 혜민서의 관사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

正, 僉正, 判官, 主簿, 各一員. 直長三員. 【仁祖朝乙酉, 二員換作副司正.】 奉事, 副奉事, 各二員. 參奉一員. 【以上內醫十二員, 以醫科. 被薦人, 啓目差下, 六臘月升降遞付.】

按 : 내의는 정원이 열둘이다. 조선 후기 내의원은 『경국대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직장이 한 사람으로 줄어든 까닭에 내의 정원을 열로 보는 오류가 있는데,¹¹⁾ 衛職 두 자리가 새로 換作 되었기에 똑같이 열둘이 된다.

④ 直房의 위치

○ 하나는 창덕궁 돈화문 바깥에 있고, 다른 하나는 경희궁 개양문 바깥에 있다.

【一在昌德宮敦化門外，一在慶熙宮開陽門外.】

按 : 조회시간 때 기다리는 장소인 내의원의 직방의 위치는 본 문헌에만 나온다.⁹⁾

④ 御醫의 임명

○ 어의는 일정한 수가 없다.<내의 중에서 가자되어 높아지거나, 동반직을 받았다 벼슬을 옮긴 뒤에는 예에 따라 초기로서 임명하고 균직에 다시 붙인다. 내의 중에 술업이 정통한 이를 혹은 하교를 받거나 혹은 경연에서 아뢰 뒤에 초기로서 겸차 한다.>

御醫無定額. 【內醫中加貴, 或東班遷轉後, 例爲草記差下, 仍付軍職, 內醫中術業精通者, 或因下教, 或筵稟後, 草記兼差.】

按 : 兼差御醫의 규정이 보인다. 겸차어의는 加差御醫로

(2) 官制 造

8) 편자미상. 『궁궐지』. 서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9) 『혜국지 연혁』 「관사 조」에 혜민서의 직방 위치가 중부(中部) 서원방으로 나온다. 강위병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혜국지』. 서울:퍼플. 2015:33. 전의감의 직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10) 『경국대전 이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활용했다.
11) 조선 후기 법전 내의원 관련 규정에는 위치의 환작에 대하여 따로 설명이 없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동안 연구는 내의원 정원에 대하여 직장이 줄어든 만큼 감원된 것으로 보았다.

도 불리며 資品이 통훈대부나 어모장군 정도의 자품을 지닌 내의가 임명된다.¹²⁾ 어의만이 차임되는 예를 들어, 대군이나 왕자의 중국 사행 길의 배종의관이나 上番 의관으로서의 직무 즉 입직 관련 인원 문제 때문에 어의의 경우 정해져 있는 수 없어도 어느 정도의 인원은 항상 유지해야 했다.

⑤ 내의의 차송

○ 장무관은 두 사람이다.<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주방관은 두 사람이다.<술 빚는 것을 관장한다. 영종(英宗 영조) 조 병술년(1766)에 특교로서 혁파되어, 장무관이 겸하게 되었다.> 종약관은 두 사람이다.<약전을 관장한다. ○ 이상은 내의 중에서 교대로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 교체한다.>

掌務官二員. 【掌一應事務.】 酒房官二員. 【掌釀酒. 英宗朝丙戌, 因特教革罷, 掌務官兼.】 種藥官二員. 【掌藥田. ○ 以上內醫中輪差, 六臘月交遞.】

按 : 내의원에는 久任이 따로 없다. 따라서 도목정사 때 내의들이 교체되므로 이때에 그들이 이전에 차송된 직임에서도 교체된다. 『해국지 연혁』 「관제 조」를 보면, 녹관에서 다시 직임을 받아 일에 통달한 한 사람을 예에 따라 장무관으로 임명하는데,¹³⁾ 그 역할에 있어 구임관의 일을 나누는 면이 있다. 내의원의 장무관 두 사람을 上掌務官과 下掌務官으로 구분한다.¹⁴⁾

2) 問安과 入侍 관련 조목 - 7조목

내의원에서 국왕과 그 가족에게 하는 각종 문안과 입시, 設廳의 종류와 시기,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각 문안이 각각의 조로 구분되어 있지만, 분량의 차이가 크다. 또한 계사문안의 일차(日次 정기적인 문안)를 제외하면, 문안하는 주체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시기는 거의 같지만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 啓辭問安 조

① 내용 개괄

닷새 간격으로 하는 日次와 국왕이 미령한 날 등에 하는 문안이 있다. 계사로서 세 제조가 모든 의관을 거느리고 한다. 형식은 같지만 구전으로 아뢰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우러러 청하는 일 및 때 없이 여쭙는 문후, 약을 의논하는 등의 일에서 구두로 아뢰어서 한다.

② 내용 고찰

日次는 가장 기본적인 문안 방식이고, 미령하 날 등은 비정기적인 문안이다.

(2) 口傳問安 조

按 : 계사문안의 口傳啓와 방법은 동일한데, 제조 혼자서 문안한다는 점이 다르다.¹⁵⁾

(3) 分提調問安 조

개괄 : 임금이 궐 밖에서 자거나, 動駕 때에는 分提調가 문안한다는 내용이다.

(4) 醫官單子問安 조

按 : 정기적인 문안은 없다. 의관이 단자로서 하는 문안에 대한 설명이다.

(5) 醫女問安 조

按 : 정기적인 문안은 없다. 의녀가 문안하는 시기에 대해 설명한다.

(6) 入侍(入侍) 조

① 내용 개괄

12) 통정대부, 절충장군이 되면 당상관으로서 “加貴”의 예로서 어의가 되었다. 이들 자품 바로 밑이 겸차어의의 대상이다. 『승정원일기』에서 이러한 예가 보인다.

13) 강위병 저, 박훈평 역주, op. cit. 19.

14) 『심약사례』 「藥院廳中及該色應例」에 나온다.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심약사례 상』 서울: 퍼플, 2015:62.

15) 본 문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육전조례 예전』 「내의원 조」에 나온다. 『육전조례 예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 (<http://e-kyujanggak.snu.ac.kr>)을 활용했다.

入診, 持湯劑, 受鍼灸, 承候의 네 규정이 기록되어있다.

② 내용 고찰

조선시대 임금에 대한 입시를 재연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다.

③ 入診

○ <세 제조가 의관을 인솔하여 입시한다. 차대(次對)¹⁶⁾에 같이 입시하면 약방이 먼저이고, 경연에 같이 입시하면 경연관이 먼저이다. ○ 도제조가 문후를 여쭙 뒤에 의관의 진료를 청한다. 차례대로 진찰하러 들어가게 하는데, 임금과 인접하여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좌측에서 곡배하고 진찰하여 왼쪽 손을 다하면, 또한 곡배하여 진찰하고 오른쪽 손 또한 왼쪽처럼 하고, 물러나서 엎드려 맥후(脈候 맥상)를 아른다. 침전이라면 곡배의 절차는 어쩔 수없이 따르기에 적당한 예로 한다.>

【三提調率醫官入侍. 次對同入, 則藥房在前, 經筵同入, 則經筵官在前. ○ 都提調問候後, 請診醫官. 以次入診, 而自上交椅坐, 則起入左邊曲拜診, 左手訖, 又曲拜診, 右手亦如左, 退伏奏脈候. 臥內, 則曲拜之節, 不得如例值使爲之.】

④ 持湯劑

○ <장무관이 소반을 받들고, 하반의관이 화로를 받든다. 세 제조 및 수의가 쫓아 들어와서 전(殿)의 계단에 이르면 수의가 소반을 받든 채 전(殿)에 올라 열쇠를 봉감한다. 도제조가 뒤에서 외쳐 고하기를 “자물쇠를 열어 은표(銀瓢 은으로 된 구기)에 붓습니다.”라고 하고, 남아 가라앉은 것까지 표주박에 붓는다. 대개 도제조가 약을 맞본 뒤에 봉전협시(奉傳挾侍)¹⁷⁾가 올린다.>

【掌務官奉盤, 下番醫官奉爐. 三提調, 及首醫隨入, 至殿階, 首醫奉盤升殿, 鑰匙奉監. 都提調後唱告, “開鑰, 注銀瓢.”, 以餘湛注瓢. 蓋都提調管藥後, 奉傳挾侍以進.】

⑤ 受鍼灸

○ <침의(鍼醫 내침의)가 의논하여 혈명을 정한다. 금루관이 시각(時刻)을 아뢰면, 세 제조가 의관을 인솔하여 궁궐에 이르러 혈단자를 먼저 문서로 들인다. 의관(醫官) 한 사람이 침구반(鍼灸盤)을 받든다. 세 제조 및 수의, 침의(鍼醫 내침의)가 쫓아 들어와서 침을 놓을 때에는 수의가 혈단자를 받들어 외쳐 고하기를 “아무 혈에 침을 놓습니다.”라고 하며, 뜸을 뜸 때에는 수의가 획지(劃紙)를 받들어 외쳐 고하기를 “아무 혈에 몇 장(壯)입니다.”라고 한다. 침구를 마치고 나서 생맥산을 달여서 들인다. 내전(內殿 왕비)이 침구 치료를 할 때에는 현재의 수의녀가 거행하는데, 세 제조가 의관을 인솔하여 궁궐에 이르러 명령을 기다린다. ○ 이상의 입시 때에는 각신(閣臣 규장각의 벼슬아치)이 함께 참여하기로 경연에서 아뢰어 정하여 규례를 삼았다.>

【鍼醫議定穴名. 禁漏官奏時刻, 則三提調率醫官, 詣闕, 穴單子, 先爲書入. 醫官一員, 奉鍼灸盤. 三提調及首醫鍼醫隨入, 而受鍼時, 則首醫奉穴單子, 唱告, “某穴受鍼.”, 受灸時, 則首醫奉劃紙, 唱告, “某穴幾壯.”, 鍼灸畢後, 生脈散煎入. ○ 內殿受鍼灸時, 行首醫女舉行, 而三提調率醫官, 詣闕, 待候. ○ 以上入侍時, 閣臣同參事, 筵稟定式.】

(7) 設廳 조

① 내용 개괄

출산관련 설치는 중전일 경우에 產室廳을 분만일 세 달 전에 두고, 후궁의 경우에는 護產廳을 해당 월에 두었는데 이의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임금과 대비가 미령하면 施藥廳을 설치하고, 중전, 세자, 세자비가 미령하면 議藥廳을 설치한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이 주체가 되어 排設한 여러 廳에 대해 설명한다. 출산 관련 규정과 현존하는 『產室廳總規』, 『護產廳小日記』와 고종 조에 내의원 제조를 지낸 이유원의 『임하필기』의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왕실의 출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재구성할 수 있다.¹⁸⁾

16) 매달 여섯 차례, 議政, 臺諫, 玉堂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上奏하던 일

17) 傳教를 전하는 임금 곁의 내시. 奉授夾侍라고도 한다.

18) 신명호. op. cit. 156-176.

3) 藥材 支供 관련 조목 - 6조목

지공이란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年例進上 조

① 내용 개괄

부용향과 의향 같은 향재, 21종의 납약 등이 기록되어있다. 모두 31항목(52종)이다.

② 내용 고찰

해마다 내의원에서 대전과 여러 전궁에 진상하는 물품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 年例卜定 조

① 내용 개괄

충청과 황해의 水軍營에서 바치는 갑이 있는 生鰓, 평안과 함경감영에서 바치는 소금이 절인 民魚와 일간한 民魚 등 모두 16항목이 나온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이 다른 관청들에게 복정한 물품들을 설명한다. 복정이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게 물품을 정하여 억지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감영이 대상이고 수군영도 더러 있다.

(3) 年例製造 조

按 : 내의원에서 해마다 제조하는 물품을 설명하는 조문이다. 예를 들어 봄과 가을에 제조하는 아교, 雲母膏, 太乙膏, 神異膏, 萬病無憂膏, 海蛤紛이 이에 해당한다. 모두 23항목이다.

(4) 京外貢藥材 조

① 내용 개괄

외공에서는 각 도별 율령에 대해 설명하고, 인삼, 사향, 녹용, 唐藥材, 倭黃連, 海艾, 紫口合, 靑大竹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한다. 경공에서는 공인이 진배하는 인삼, 우황, 사향, 녹용, 옹담, 草材, 羊등의 물품에 대해 설명한다.

② 내용 고찰

도성 안팎에서 내의원으로 공납하는 약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외공은 諸道審藥이 관계하는 공납이다. 경공은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 공인이 관계하였다.

(5) 應下 조

① 내용 개괄

여러 殿과 宮의 대령 남비개에 들어가는 인삼과 우황, 납약에 들어가는 인삼과 우황, 운모고와 衣香, 옥추단, 납약에 들어가는 사향을 설명한다.

② 내용 고찰

해당 약재를 만드시 써야 하는 경우와 그 양을 설명한 조문이다.

(6) 藥劣 조

① 본문

○ 인삼.<첩약과 환제의 경우에 한 돈마다 다섯 푼이 들어간다. ○ 생재는 劣法을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 궁궐로 들일 때나 혹은 열한 것과 섞인 경우에는, 하교로서 넣는데, 한 돈마다 두 푼을 封하여 들인다.>

人蔘. 【貼藥丸劑所入, 每錢五分. ○ 生材無劣法, 而若於內入時, 或有并劣, 以入之下教, 則每錢以二分封入.】

○ 우황(牛黃).<한 돈마다 세 푼이다.>

牛黃. 【每錢三分.】

○ 용뇌(龍腦).<한 돈마다 세 푼이다.>

龍腦. 【每錢三分.】

○ 당재(唐材 중국산 약재).<한 돈마다 다섯 푼이다.>

唐材. 【每錢五分.】

○ 초재.<한 돈마다 한 돈이다.>

草材. 【每錢一錢】

○ 골각.<한 돈마다 한 돈 다섯 푼이다.>

骨角. 【每錢一錢五分】

② 내용 고찰

藥力이 모자라는 경우에 추가로 넣어주는 양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원래 두석(豆錫 놋쇠)나 正鐵같은 금속성 물품의 경우에 劣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질이 좋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보통 “劣并”을 해당 물품 이름 앞에 붙인다.¹⁹⁾ 본문에도 “生材無劣法”이라 하여 특수한 경우임을 말하고 있다.

4) 式例 관련 조목 - 9조문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례에 대한 내용으로 아홉 개의 조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임시로 맡게 되는 供仕 관련 조문과 入直, 入啓文書, 文簿 등이다.

(1) 監劑 조

① 내용 개괄

탕제는 제조 한 사람과 어의 한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 것을 살피고, 장무관이 약재 무게를 다는 것을 맡아하며, 제조 한 사람과 下番醫官이 약 달이는 것을 살핀다. 납약은 제조 한 사람과 어의 한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 살피고, 제약관(내국제약관)이 약재 무게를 다는 것을 맡아하고, 헤민서의 의녀가 환을 만든다. 탕제, 납약, 啓下藥, 茶飲, 수리간의 반찬에 들어가는 여러 약물의 항목이 있다.

② 내용 고찰

진상되는 여러 약의 監劑에 대한 내용이다.

(2) 玉樞丹祭 조

① 내용 개괄

位版, 行茶, 香祝, 祭物, 祭官에 대한 내용이다.

② 내용 고찰

제사의 일사와 祭官, 필요한 물품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설명한다.

의약의 神인 신농씨에게 매년 단오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날은 옥추단을 진상하는 날이기도 하므로 붙은 이름이다.²⁰⁾

(3) 入番 조

① 내용 개괄

본원, 內藥房, 員役, 別入直, 別省記의 항목이 있다. 내의원 각 관사별 입직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본원은 장무관이, 內藥房은 上番御醫 한 사람, 下番內醫 한 사람, 침의 한 사람, 의약동참 한 사람이다.

② 내용 고찰

內藥房은 조선 전기에는 전의감 안에 있는 별도 조직으로 전의감과 내의원이 분화될 때에 내의원의 모태가 되어 내의원의 이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개념이다. 입번 조에 다른 관사들과 함께 언급된 것을 보면 내의원과는 별도의 건물 형태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4) 舉動進參 조

① 내용 개괄

제조는 자신의 품계에 의해 班次를 서고, 시위의관은 승정원 관료 앞에 선다.

② 내용 고찰

세 提調와 시위의관의 반차에 대한 내용이다.

19) 『가례도감 영조정순왕후』「품목질」, 『경모궁약기조성청의례』「품목질」과 「감결질」에 보인다. 해당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활용했다.

20) 본 문헌의 「연례진상 조」를 보면 5월 5일에 연례적으로 옥추단을 진상했다.

(5) 坐起 조

① 내용 개괄

啓辭問安, 褒貶, 考講, 藥材捧上, 臘藥封罈(납약을 자루에 담음), 醫女講의 항목이다.

② 내용 고찰

제조가 좌기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좌기나 포폄, 고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6) 奉使 조

① 내용 개괄

赴燕, 看病, 熟地黄監採, 蛇油丸監劑, 監艾, 溫井汲水の 항목이다.

② 내용 고찰

內醫가 임시적으로 차임되는 여러 직무에 대해 설명한다.

③ 간병

○ 간병.<어의가 하교를 받들어 거행한다. ○ “持藥物”이라는 하교가 있으면 예를 따라 떨어지지 않으며,²¹⁾ “不離”라는 하교가 있으면 持藥物하며, “持相當藥物”이라는 下敎가 있으면 한 차례 간병하고, “往來”라는 하교가 있으면 날마다 왕래하며, “隨往”이라는 하교가 있으면 함께 다녀온다. ○ 不離는 거듭 머물러서 날마다 書啓하고, 隨往은 때에 따라 서계하고, 그 나머지는 한 차례 서계한다. ○ 약물이라 하면 인삼 두 냥과 草材 여러 가지를 하사하러 가지만, 상당약물이라 하면 단지 인삼 두 냥이다.>

看病. 【御醫奉下敎舉行. ○ 有“持藥物”下敎, 則例爲不離, 有“不離”下敎, 則例爲持藥物, 有“持相當藥物”下敎, 則一次看病, 有“往來”下敎, 則逐日往來, 有“隨往”下敎, 則隨往. ○ 不離則仍留逐日書啓, 往來則逐日往來書啓, 隨往則隨時書啓, 其餘只一次書啓. ○ 藥物, 人蔘二兩草材各種賚去, 相當藥物,

21) 看病 대상 옆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看病함을 말한다.

只人蔘二兩.】

按 : 간병에서 持藥物, 持相當藥物 등의 구분은 기존 문헌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임에도 이 문헌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 給馬 조

① 내용 개괄

계청마, 보과마(과발을 보충하는 말), 재지마(짐 싣는 말)의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계청마(啓請馬 임금에게 아뢰어서 청한 말)의 경우에는 動駕 때에 侍衛하는 侍陪官과 내전(內殿 왕비)의 動駕 때에 侍衛하는 의녀가 탈 말 및 紫金丹, 保嬰丹(소독보영단), 경옥고 감제관의 짐 싣는 말, 서원이 탈 말은 모두 啓請하여 채비하게 된다.

② 내용 고찰

내의가 말을 지급받는 경우를 설명하는 조문이다.

(8) 入啓文書 조

① 내용 개괄

내의원의 입계문서는 啓目, 粘啓, 啓辭, 草記, 啓狀, 書啓, 望單子, 別單, 小單, 月計, 未啓下單子가 있다.

② 내용 고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있다.

(9) 文簿 조

① 내용 개괄

모두 10종의 문부가 기록되어있다. 『日記』등 내의원 자체의 문헌이 다수인데, 예외적으로 영조 25년(1749년) 규장각에서 간행된 『탁지정례』가 수록되어 있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에서 생성되는 여러 문부에 대해 설명한다. 문부라고 해서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내의원의 서책은 「집물 조」에서 별도로 설명된다. 『탁지정례』는 본문의 「잡령 조」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응용되는 물품의 기준이 된다. 『탁지정례』는 전 23책으로 이 중에 『각사정례』의 제 6책에 『내의원정례』가 실려 있다.

5) 약재 외의 支供 관련 조목 - 2조문

(1) 供饋 조

① 내용 개괄

경옥고 제조 때에 제조 이하의 의관과 원역은 혜청(惠廳 선혜청)에서 받아 거행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4항목이다.

② 내용 고찰

본문 순서로는 식례 관련 조문 사이에 위치하지만 내용상 지공 관련 조문이다. 내의원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음식의 공급처에 대해 설명한다.

(2) 率屬 조

① 내용 개괄

의녀 등 모두 13항목이 기록되어있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에 속한 의관 외의 원역에 대해 그 수와 응역에 대해 설명한다.

③ 의녀

○ 의녀는 스물 두 사람이다.<의사(醫司 혜민서)의 장래 의녀 혹은 침선비 중에서 계목으로 충차(充差 충원하여 임

명)한다. ○ 차비대령이 열 사람이고 강의녀가 열 두 사람인데, 침(鍼 침의녀)과 맥(脈 맥의녀)으로 절반씩 나누어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

醫女二十二名. 【以醫司將來醫女, 或鍼線婢中, 啓目充差. ○ 差備待令十名, 講醫女十二名, 鍼脈分半教訓.】

按 : 강의녀가 열둘인 이유는 내의가 강의녀를 하나씩 맡아 교육시키기 때문이다.²²⁾ 기존의 의녀 연구는 혜민서 의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했지만,²³⁾ 내의원의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본문의 내용은 내의원의녀 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3) 料布 조

① 내용 개괄

料祿, 戶布, 兵布, 雇立, 軍丁錢의 항목이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의 솔속 등이 받는 급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6) 기타의 조문 - 3조문

이상의 분류로 묶이지 않은 집물, 약전, 잡례 조이다. 「집물 조」를 『해국지』에서는 식례로 묶었으나 여기서는 기타가 있으므로 따로 묶었다.

(1) 什物 조

① 내용 개괄

御筆懸板, 廣和詩帖. 扁額, 提調印, 郎廳印, 待令藥櫃, 待令南飛介, 여러 本의 의서, 銅人, 여러 가지 모양의 기명(器皿 그릇붙이)과 포진(鋪陳 자리)이 있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에서 보관 중인 여러 물품과 서책에 대한 내용이다.

22)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1월 8일 기사
23) 그 집대성이 한희숙. 『의녀』, 서울:문학동네. 2012.

(2) 藥田 조

① 내용 개괄

내의원의 약전은 약전고개와 밤섬(栗島), 너섬(汝于島)에 있다. 이들 약전의 量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② 내용 고찰

내의원 약전의 규모와 실태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이다. 밤섬과 너섬은 근처이다.

(3) 雜例 조

○ 강심수를 길어 올 때에는 장무관이 미품한다.

江心水汲來時，掌務官微稟。

○ 연례적으로 응용되는 물품의 종류는 『탁지정례』에 의거하여 수문을 만들어서 정원(政院 승정원)에 드리고, 봉감으로 여러 해당 관아에서 가져다 쓴다.

年例應用物種，依『度支定例』，成手本，呈政院，捧甘取用，於各該司。

○ 서원 여러 종류는 6월과 12월에 체직하여 바꾸는데, 약색(藥色 약색서원)은 의관이 권집하여 차출한다.

書員各色，六臘月遞易，而藥色則醫官圈點差出。

按：다른 조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열한 개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는 그 중 세 개만 소개하였다.

3. 고찰

1) 표제 명명의 적절성

이 문헌은 소장처인 규장각의 서지에 따라 『내의원식례』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문헌의 내용 중에는 『내의원식례』라는 표제가 없으며 표지와 목록, 본문에 모두 “內醫院”이란 제하로 시작한다. 동시대의 다른 문헌에서 “式例”란 이 전부터 있어온 전례를 설명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해민서의 관청지인 『해국지』에는 식례 편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는 8개의 조문이 실려 있다. 8개의 조문은 入直，分差，供事，擬望，扶助，該用文狀，書籍，什物이다.²⁴⁾ 관상감의 관청지인 『서운관지』에도 식례 조가 별도로 보인다. 그런데 『내의원식례』에 실린 서른 개의 조문 내용 중에는 官舍，官制처럼 식례로 포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 일부 보인다.²⁵⁾

그렇다면 본 문헌의 내용에 적절한 명칭은 무엇일까. 논자는 본 문헌이 일정부분 관청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 즉 서른 개의 조문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제목으로 “式例”보다는 “院志”가 더 적절하다. 18세기에 간행된 기술직 아문의 관청지인 『해국지』(1778년 중수됨)와 『통문관지』(1720년 활자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본 문헌의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한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그런데 이들보다 조문 체제 면에 있어서 더 유사한 관청지가 있으니 바로 관상감의 관청지인 『서운관지』이다. 『서운관지』는 순조 11년(1811)에 간행되어 저술 시기도 본 문헌과 비슷한 시기이며 본문 내용에서 따로 편을 나누지 않고, 조목별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또한 동일하다.²⁶⁾ 물론 분량에 있어 4권 2책에 달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구성 체제의 유사성은 눈여겨볼만 하다.

그러나 본 문헌을 관청지로 보기 위해서는 내의원 관청지 관련 기록과도 일치해야 한다. 논자의 조사로는 내의원지 관련 기록은 네 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동일 날짜 기사인데²⁷⁾ 『약원지(藥院志 내의원지)』를 통해 經宿 때의 問安에 관한 조목을 조사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의 識語에 “藥院院志”가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의원식례』 「문부 조」에 내의원 소장으로 “院志”가 기록되어 있다.

본 문헌은 내용 중의 “정종(正宗 정조)” 등의 기록과 다른 사항 등을 종합할 때에 純祖 조의 문헌이 분명하므로²⁸⁾ 『승정원일기』의 기사에 나오는 『약원지』와는 별개의 문헌임이 확실하다.

24) 강위빙 저, 박훈평 역주, op. cit. 15

25) 식례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26) 성주덕. 『국역 서운관지』.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21-22.

27) 정조 7년(1783) 8월 3일 기사.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를, 『일성록』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 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활용했다.

28) 뒤에 더 상세하게 논한다.

그러나 본 문헌이 기존의 관청지를 중수하거나 보충한 문헌일 가능성은 있다.

첫째, 『내의원식례』 「문부 조」의 기록에서 본 문헌을 지칭할 만한 다른 책이 보이지 않는다. 「문부 조」에는 당시 내의원에서 생성된 일기, 등록 등이 모두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본 문헌의 내용으로 유추되는 서적은 “院志” 뿐이다.²⁹⁾ 해당 조에서 각 문부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과 책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내의원의 관청지가 개정되어 여러 본일 가능성도 있다.

둘째,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내의원지 내용 중에 경숙 때의 문안에 대한 조목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내의원식례』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문헌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만한 명명은 식례보다는 관청지라는 점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가 본 문헌이 관청지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발견되는 다른 문헌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저술자에 대한 고찰

내의원을 지칭하면서 “本院”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므로 저술자는 내의원에 속한 원역으로 추정될 뿐, 서문, 발문이 없어서 더 자세한 논증은 어렵다.

3) 저술 시기에 대한 분석

서문과 발문이 없으므로 저술 시기에 대한 분석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 국왕 관련 기록 분석

① 정종(正宗)은 조선 22대왕 이산의 원래 묘호이다. 대한제국 이후(1899)에 正祖로 바뀌었으니 이 묘호가 보이면 정조 사후(1800) 이후, 1899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英宗

은 조선 21대왕 이금의 원래 묘호로 고종 조(1890)에 英祖로 바뀌었으니 이 묘호가 보이면 영조 사후 1890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내의원식례』에는 두 묘호가 모두 보이므로 1800년 이후 1890년 이전의 문헌으로 볼 수 있다. 정조 이후 임금의 묘호는 보이지 않으므로 純祖 조의 저술로 볼 수 있다. 이는 규장각의 기존 서지에서 살쾨던 방식이다.

② 當宁란 말은 “지금 임금”이란 뜻이다. 본문에는 「年例進上 조」에 두 차례, 「年例卜定 조」에 한 차례, 「京外貢藥材 조」에 두 차례, 모두 다섯 번이 나온다. 이 중 연도가 표기된 경우는 신유년과 정묘년인데 앞서 묘호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신유년은 순조 원년(1801)이고 정묘년은 순조 7년(1807)이다.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재확인된다. 이를 통해 본 문헌이 1807년 4월 이후 순조 34년(1834 순조의 졸년) 이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례진상 조」

○ 消毒除嬰丹. 【上元, 七夕. ○ 七夕當宁因下教姑停.】

生熟鮫. 【統制使, 慶尙左兵使相間, 逐朔一次. ○ 當宁辛酉因下教停捧.】³⁰⁾

「연례복정 조」

○ 倭柑子. 【釜山訓導. ○ 以上年例, 發關封進. 當宁辛酉, 因下教停減.】³¹⁾

「경외공약재 조」

○ 羅蓼. 【- 중략 - 當宁丁卯, 因江陵府使疏, 特減.】³²⁾
臘蓼. 【- 중략 - 當宁丁卯, 因江陵府使疏, 特減.】³³⁾

(2) 본문 속 蛇油丸 내용 분석

「奉使 조」

○ 蛇油丸監劑. 【御醫下往製來. 江華南陽湖西, 間年輪回, 而若值南陽當次年, 則稟旨舉行.】

사유환의 공납은 매해 7월에 이루어지는데 시기별로 공납지가 자주 바뀌었기에, 이를 알 수 있다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 『내의원식례』에서는 강화와 남양, 호서 세 곳이

29) 『해국지』, 『통문관지』를 보면 해당 책이 본문 내용에서 소장 관청의 장서로 언급된다. 따라서 『내의원식례』도 완성되었다면 내의원의 장서로 언급되어야 한다.

30)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

31)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

32)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 4월 22일 기사

33)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 4월 22일 기사

공납지이다. 『승정원일기』³⁴⁾를 보면 정조 15년(1791)부터 순조 13년(1813)까지 세 곳이 공납지이다가 순조 14년에 이르러서는 공납지에 남양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의원식례』는 1814년 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萬機要覽』과의 내용 비교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 조」의 인삼에 관한 내용은 『만기요람 재용편』 「內局 御供蔘 조」와 그 내용이 거의 같다. 특히 원래의 공물 량에서 감생되는 이력은 동일하며 그 결과 내의원에 공물로 바치는 인삼의 양도 같다. 공물 량은 같은 임금 시대 내에서도 수시로 바뀌므로 이러한 유사성은 『만기요람』과 『내의원식례』가 비슷한 시기에 쓰였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내의원식례』 「관제(官制) 조」에서 별군직에 대한 기술은 『만기요람 재용편』 「요록 조」와 문장이 거의 같다.

『내의원식례』와 『만기요람』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 상세하다. 따라서 두 문헌이 동일한 자료를 참고하여 저술되었거나, 아니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늦은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만기요람』은 純祖의 명에 의해 徐榮輔, 沈象奎에 의해 1808년에서 1809년 사이에 찬진된 책이다. 따라서 『내의원식례』 또한 이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국왕 관련 기록에서 1807년까지의 내용만 보인다는 설명과도 부합한다.

(4) 종합적인 결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내의원식례』는 1807년 4월 이후 1814년 이전에 완성되었으니, 그 저술시기를 대략 순조 10년(1810) 전후로 보면 되겠다.

4) 편제구성의 특성

『내의원식례』에 보이는 여섯 개의 분류는 문안 관련 분류를 빼면 다른 기술직 관청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명목이다. 그러나 본 문헌에서만 보이는 독특성도 있다.

(1) 考課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다. 사역원이나 해민서,

관상감 모두 관사에 속한 생도가 있고, 생도의 입속과 취재를 거친 체아직이 각 관청에 종사한다는 동일한 면이 있었다. 그런데 내의원의 경우는 생도가 따로 없으며, 체아직 자리라는 점은 같지만 취재를 통하지 않았기에 이들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2) 국왕과 그 가족에 관련된 내용은 조목의 수도 많고 그 내용도 상세하다. 예를 들어 문안과 입시 관련 조문들은 매우 상세하며, 같은 내용도 반복된다. 내의원의 존속 이유가 다른 기술직 관청에 비해 더욱 왕실과 크게 관련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왕정 국가라는 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왕실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명칭만 기록하거나 해서 상세한 정보를 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입계문서 조」에서 서식이 이름만 기재되거나, 「집물 조」에서 내의원에 소장된 의서들에 대해 “여러 본의 의서”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혁에 있어서도 내의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매우 소략하다. 이 문헌 외에 기존에 저술된 『내의원지』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해당 내용이 그에 상세하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으며, 왕실과 관련된 내용에서 세월의 변화에 따른 수정사항만 반영하여 부가적으로 이 문헌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Ⅲ. 결론

논자는 『내의원식례』의 표제 명명에 있어 적절성에 대해 논하고 나서, 그 저술시기를 살피고, 편제 순서에 따라 본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논자는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내의원식례』는 기존의 관청지를 중수하거나 보충한 문헌으로 추정 된다.

「문부 조」의 기록에서 본 문헌을 지칭할 만한 다른 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승정원일기』의 내의원지 관련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내의원식례』에서 찾을 수 있는 점. 문헌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만한 표제의 명명은 관청지라는 점

34) 정조 15년 4월 29일 기사. 순조 14년 7월 25일 기사

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현재의 표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추후 다른 문헌을 통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문헌의 저술시기가 순조 10년(1810) 전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의원식례』 본문 내용에서 국왕 관련 기록, 蛇油丸 관련 기술을 참조하고, 『萬機要覽』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이다.

셋째, 『내의원식례』는 19세기 초반 내의원의 실제 운영과 규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차 자료이다.

내의원 관아 건물들과 직방의 위치(관사 조), 入診과 持湯劑의 절차(입시 조), 약전의 규모(약전 조) 등은 본 문헌을 통해서만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넷째, 『내의원식례』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의약관련 용어와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藥劣의 개념(약열 조)과 持湯劑의 뜻(입시 조) 등은 이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
 1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14. 안상우. 「고의서산책 120 조선왕실의 규정집」. 민족의학신문. 2002.8.

참고문헌

1. 강위빙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해국지』. 서울:퍼플. 2015.
 2. 김경문, 김지문. 『국역 통문관지』.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3. 성주덕. 『국역 서운관지』.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4.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심약사례 상』. 서울:퍼플. 2015.
 5. 편자미상. 『궁궐지』. 서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6. 한희숙. 『의녀』. 서울:문학동네. 2012.
 7. 김정선. 「1898년도 조선왕실의 의료연구」. 의사학. 2004; 13(2):219-232.
 8. 신명호. 「조선시대 궁중음식 관련 고문헌 자료 소개」. 고문서연구. 2002;21:156-176.
 9. 주영하. 「조선왕조 궁중음식 관련 고문헌 자료 소개」. 장서각. 2013;30:422-436.
 10. 홍세영. 「왕실의 의약」. 한국의사학회지. 2010;23(1): 105-113.
 11.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